

#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

(김대현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556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9. 10. 25.

발 의 의 원 : 김대현, 김규학  
김원규, 김지만  
김태원, 박갑상  
장상수, 하병문  
의원(이상 8명)

## 1. 제안이유

-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에게 올바른 성(性)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·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·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노인 성인식개선사업”의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·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- 라.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, 성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등의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1항)
- 바.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노인복지법」 제4조)
- 다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
##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에 따라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노인 성인식개선사업”이란 노인에게 올바른 성(性)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·인식 등 가치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·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대구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·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계획수립 등)**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등에 관한 사항
4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·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
5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·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. 노인 성범죄·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5조(사업)**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, 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
2.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3.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
4.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사업
5. 노인의 성범죄·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사업
6.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구·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6조(센터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노인 성교육사·성상담사 전문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
2. 노인 성교육사·성상담사 보수교육
3. 노인 성교육사 자조모임 운영
4. 노인 성상담사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(supervision)
5. 노인 성교육사 현장 모니터링
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성인식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시장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」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□ 노인복지법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·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,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9조의9(금지행위)**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노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<개정 2016. 12. 2.>

1.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2.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